

2026년도 한국연구재단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채용 공고 -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 공개 채용 -

「한국연구재단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국가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를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울러 재단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채용 개요

- ☐ (채용규모) 총 6명 이내
- ☐ (고용형태) 체험형 청년인턴(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하는 기간제 근로자)
- ☐ (채용기간) 6개월 (2026.4.1. ~ 2026.9.30.)
- ☐ (처 우) 월 2,160천원(세전)
- ☐ (근무장소)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 상세주소: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 ☐ (지원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구분	지원자격
연령	· 임용일 기준('26.4.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에 근거한 청년 ※ 1991.4.2. 이후 ~ 2011.4.1. 이전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최대 3살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 가능
기타	· 임용일('26.4.1.)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결격사유	· 한국연구재단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이전 한국연구재단 인턴 유경험자 및 현재 인턴근무 중인 자

□ (결격사유) 재단 내규 「인사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14.9.29., '17.6.16., '18.7.5.)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5. 신체검사 결과 이사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② 채용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사람은 불합격 처리하며, 임용 후에 발견된 사람은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8.7.5.)

□ 업무수행 내용

수행직무	업무수행 내용
총 무	· 등기우편물 및 택배 수발신 관리, 자산 관리, 문서 정리 등
인 사	· 소관 위원회 및 행사 운영지원, 제증명발급 처리, 전화응대 등
프로젝트 관리	· 사업관련 데이터 관리, 사업소관 위원회 운영지원, 전화응대 등

2 전형절차 및 세부내용

공고 · 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증 위원회	임용
'26.2.11.~ '26.2.26.	'26.3.5.	'26.3.13.	'26.3.18.	'26.4.1.
15일 간 공고	5배수 선발	합격후보자 선발	전형결과 검증	-

1. 채용공고 · 접수

- (공고게시) 재단 홈페이지, 장애인고용공단 채용 홈페이지, 알리오,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등
- (접수기간) 2026.2.11.(수) ~ 2026.2.26.(목) (초일 불산입 15일간)
- (접수방법) 아래 방법 중 한가지 선택(①, ② 중복 접수 불가)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cyh4504@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042-620-623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서류접수 완료자는 한국연구재단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불요

② 한국연구재단 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및 제출

* 채용대행 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nrf/job/2602090004>)

지원서에 나이·주소·학력·성적·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지 않는 직무능력 중심 채용

※ 최소한의 필수자료(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만 수집

2 서류전형 (1차)

- ☐ (선발배수) 모집 분야별 채용인원 수의 5배수 선발
- ☐ (심사대상) 접수 사이트 내 입사지원 상태가 '지원완료'인 지원자
-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전형위원회	▶ 총 3인(외부위원 포함)으로 구성						
평가내용	▶ (심사방법) 심사위원별 지원 서류 검토 및 응시자별 평가점수 부여 ▶ 중점평가요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평가요소</th></tr> </thead> <tbody> <tr> <td>직무수행능력</td><td>· 필요지식, 필요기술, 직무수행태도</td></tr> <tr> <td>직업기초능력</td><td>·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이해, 대인관계, 자원관리</td></tr> </tbody> </table> ▶ (결과도출) 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가를 적용하고, 가점을 합산하여 응시자별 서류심사 최종점수 확정 ※ 산술평균 적용 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 점수 미반영	구 분	평가요소	직무수행능력	· 필요지식, 필요기술, 직무수행태도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이해, 대인관계, 자원관리
구 분	평가요소						
직무수행능력	· 필요지식, 필요기술, 직무수행태도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이해, 대인관계, 자원관리						
면 접 전 형 대상자 선발	▶ 서류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 분야별 채용인원 수의 5배수까지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에게 차기 전형단계 기회 부여 ▶ 전형 점수 60점 미만(가점 불포함)인 자는 선발 배수와 무관하게 탈락 ▶ 국가유공자 가점 적용대상인 경우,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 시 가점 적용하여 국가유공자 가점을 포함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가점부여 범위를 따름						

□ (서류) 가점 항목

내 용

◆ (기본원칙) 가점은 최대 15점까지 부여

- ▶ 단, ③ 비수도권 지역인재, ④ 저소득층, ⑤ 북한이탈주민, ⑥ 다문화가족, ⑦ 자립준비청년 가점은 중복 시에도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

① [국가유공자]

10% 가점 대상자	5% 가점 대상자
만점의 10%	만점의 5%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가점 부여 범위 여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지침(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

② [장애인] 가점 5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③ [비수도권 지역 인재] 가점 3점

-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사람 또는 재학·휴학 중인 사람

④ [저소득층] 가점 3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⑤ [북한이탈주민] 가점 3점

-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가능한 사람

⑥ [다문화가족] 가점 3점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사람

⑦ [자립준비청년] 가점 3점

-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
※ 자립준비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사람

3 면접전형 (2차)

□ (선발배수) 모집 분야별 채용인원 수의 1배수 선발

□ (심사대상) 면접전형 선발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중 기한 내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지원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전형위원회	▶ 총 5인(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으로 구성						
평가내용	▶ (심사방법) 다대다 또는 다대일 그룹면접 ▶ 중점평가요소						
	<table><tr><th>구 분</th><th>평가요소</th></tr><tr><td>직무수행능력</td><td>· 필요지식, 필요기술, 직무수행태도</td></tr><tr><td>직업기초능력</td><td>·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이해, 대인관계, 자원관리, 직업윤리</td></tr></table>	구 분	평가요소	직무수행능력	· 필요지식, 필요기술, 직무수행태도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이해, 대인관계, 자원관리, 직업윤리
	구 분	평가요소					
	직무수행능력	· 필요지식, 필요기술, 직무수행태도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이해, 대인관계, 자원관리, 직업윤리					
▶ (결과도출) 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응시자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가점을 합산하여 응시자별 최종점수 확정							
※ 산술평균 적용 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점수 미반영 ※ 전형위원회 위원이 5명 미만이거나 응시자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응시자에 대한 평가점수가 5명 미만으로 반영되는 경우 산술평균으로 확정							
최 종 합 격 대상자 선발	▶ 면접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 분야별 채용인원 수의 1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장애인>비수도권 지역인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함 ※ 동 기준 적용 후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정함 ※ 서류전형 점수 동점 시, 면접전형 평가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정함(해당 평가항목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적용) ※ 면접전형 평가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점수 동점 시, 서류전형 평가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정함(해당 평가항목의 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 적용) ▶ 면접전형점수 60점미만(가점 불포함)인 자는 선발 배수와 무관하게 탈락 ▶ 국가유공자 가점 적용대상인 경우,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 시 가점 적용하여 국가유공자 가점을 포함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가점부여 범위를 따름						

□ (면접) 가점항목

내 용

◆ (기본원칙) ① ~ ② 가점 적용하며, 해당 시 최대 10점까지 부여

① [국가유공자]

10% 가점 대상자	5% 가점 대상자
만점의 10%	만점의 5%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가점 부여 범위 여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지침(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

② [장애인] 가점 5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4 채용검증위원회

□ (주요내용) 시험 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한 전형별 진행 과정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한 검증 및 면접전형 결과 고득점 순위대로 최종 합격 대상자 확정

□ (위원회 구성) 감사부서 직원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

5 임용 절차 진행

□ (결격사유 확인) 최종 합격 대상자의 결격사유 조회(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장,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등 실시

※ 결격사유 확인 결과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거나, 대상자가 입사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예비합격자)로 채용 진행

[채용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 신체검사결과 이사가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
- ▶ 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예비합격자 제도) 최종합격 후보자 중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임용 후 결원 등을 고려하여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채용 합격 후보자로 관리

[예비합격자 운영]

- ▶ 목적 : 채용 요청 부서의 결원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 최종 확정된 채용 대상자의 결격사유 확인, 입사 포기 등 채용 취소 사유 발생 시 재공고 및 채용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 ▶ 대상 : 면접심사 결과 최종합격자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대상자 전원
(단, 과락 대상자 등 최종합격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외)
- ▶ 운영기간 :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운영
- ▶ 운영방법 : 면접결과 통보 시 예비합격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운영기간 내 당초 채용 확정자의 채용 취소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채용

- (근로계약) 인사발령 및 근로계약 체결

3

행정사항

1. 부정합격자 처리

- (본인 기소 시) 채용비리 직접 가담자에 해당, 즉시 퇴출 추진
- (관련자 기소 시)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출
- 관련자 기소 시 부정합격자 퇴출 절차

① 업무배제	② 재조사	③ 징계위 동의後 퇴출
관련자 기소 시 즉시 업무배제	부정청탁·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한 제3자가 부정합격자와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 확인 ※ 확인 : 법원은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 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 역시 부정 행위자로 보아 합격취소 등 대상으로 간주	제3자와 해당 합격자 간 밀접한 관계 성립 시 기관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 ※ 퇴출 : 내규·인사규정상 '직권 면직' 등 적용 ※ 동의 :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준용

2. 채용서류의 반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 청구분에 한하여 반환
- ☐ (반환대상서류) 채용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일체
 - ※ 온라인 제출 서류 제외
- ☐ (반환청구기간) 채용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 요구 가능
- ☐ (청구방법) 채용전형 홈페이지 Q&A에서 반환신청

3. 기타 행정사항

- ☐ 분야별 지원자 중 채용대상자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응시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부담으로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증빙 접수 및 진위 확인 예정)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 온라인 접수 시, 본인의 고의 및 과실 또는 착오로 가점* 여부를 오 기재(또는 오선택)하여 증빙확인이 불가할 경우, 차기전형 기회 미부여함.
 - * 국가유공자(보훈),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 구비서류 등에 중대한 거짓이 밝혀진 경우 및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에는 전형결과를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함.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득실 내역을 증명·확인함.
 -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상에 개인 인적정보(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사진 등) 관련 일체 기재 또는 부착 금지함.
- ☐ 전형 중 부정행위는 전형단계별로 무효처리하며, 임용 후 적발되는

경우 탈락 처리함.

◆ (부정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또는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합격 및 근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을 우대함.

※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련 법(국가유공자법 제31조) 및 지침에 따라 법정기점 부여 여부 결정

□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준수하며,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수행 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면접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지 않음.

○ 채용 전형 간 블라인드 사항(성명, 성별, 연령, 출신지역 및 학교, 학력, 前·現 소속기관명 등) 위반 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전형 단계 시 4촌 이내 친족 근무 여부 확인서 및 부정합격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재단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에 대해 합격 취소, 징계,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채용 과정에 감사업무 담당자가 참여하고, 감사 및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채용 관련 문서 일체는 영구 보관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 기조를 유지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용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반환 요구 가능함.

※ 단, 온라인 접수서류는 해당사항 없음

□ 채용 불합격자로서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후 15일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제기 접수

* (예외)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경우 등

- ☐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채용인원, 전형내용, 전형일정 등은 변경(순연 또는 잠정중단)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채용사이트 등 공지 예정임.
- ☐ 최종 합격자의 입사포기, 임용 결격사유 등에 따른 결원발생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까지)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함.
- ☐ 최종합격자 채용 후 재단 상황에 따라서 타 부서 배치 및 근무 가능함.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관한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www.ncs.go.kr) 참조